

보 호 관 찰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숙식 제공, 직업훈련 등 9종의 갇생보호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3에는 숙식 제공을 하는 갇생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설치·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갇생보호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갇생보호 분야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경고장, 유치허가 신청 등 시행규칙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3 제1호 “시설의 규모 및 설비”를 “시설 기준”으로 하고 가목 “숙식 제공 시설의 규모 및 설비”를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숙식제공 외 시설의 규모 및 설비

항 목	기준
입 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규 모	연면적 49.59m ² 이상
설 비	사무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위생시설 등

비고

- 1)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직업훈련을 위해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크기의 교육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심리상담 등을 위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갱생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가 있는 공간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숙식제공 시설

나. 숙식제공 외 시설

-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직업훈련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시설장과 직업훈련 교사는 겸할 수 있다.
- 2)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해당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시설장과 전문가는 겸할 수 있다.
- 3) 위 1), 2) 외 전문자격이 요구되지 않거나, 자격 검정이 없는 분야의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전문가는 겸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 가목·나목·다목·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숙식제공 시설

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 교사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 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의 해당 직종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전문가 등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외의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해당 갱생보호 사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 경력자	해당 갱생보호 사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별지 제19호서식 제1호 중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사회봉사·수강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구인·유치·처분취소”를 “구인·유치·처분취소·형사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제48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숙식제공 시설의 규모 및 설비

입소정원 면적 · 설비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1명당 시설면적	13.22㎡ 이상	13.22㎡ 이상	9.9㎡ 이상
1명당 거실면적	4.95㎡ 이상	4.95㎡ 이상	4.95㎡ 이상
설비	거실, 사무실, 상담실, 집회실, 도서실 또는 오락실, 식당,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운동시설 및 창고를 설치할 것	거실, 사무실, 집회실, 조리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것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갱생보호시설의 시설면적은 $13.22\text{㎡} \times 100 + 13.22\text{㎡} \times 0.7$ (입소정원-100)으로 한다.
- 2) 입소정원이 50명 미만인 갱생보호시설로서 상담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상담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목욕실이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에 목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는 구분하여 수용하고, 감염병 환자는 격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4)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식제공 외 시설의 규모 및 설비

항 목	기준
입 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규 모	연면적 49.59㎡ 이상
설 비	사무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위생시설 등

비고

- 1) 직업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직업훈련을 위해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크기의 교육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 2)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은 심리상담 등을 위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갱생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가 있는 공간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가. 숙식제공 시설

종사자 \ 입소정원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시설장	1명	1명	1명
행정책임자	1명	1명	·
생활지도사	2명	1명	1명
사무원	1명	1명	1명
조리사	1명	1명	1명

비고

- 1) 입소정원이 100인 이상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를 3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2) 입소정원이 10인 이하인 갱생보호시설은 생활지도사가 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숙식제공 외 시설

- 1)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직업훈련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시설장과 직업훈련 교사는 겸할 수 있다.

2)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해당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이 있는 시설장과 전문가는 겸할 수 있다.

3) 위 1), 2) 외 전문자격이 요구되지 않거나, 자격 검정이 없는 분야의 갱생보호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전문가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전문가는 겸할 수 있다.

3. 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숙식제공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가.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거나 교정·보호직 7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종무(宗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생활지도사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다. 갱생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년 이상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갱생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 교사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3급 이상의 해당 직종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 또는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등록자격, 공인자격)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등록자격, 공인자격)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직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전문가 등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등록자격, 공인자격)을 취득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외의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위 숙식제공을 하는 갱생보호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해당 갱생보호 사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 경력자	해당 갱생보호 사업과 관련한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 고 장

주 소 :

성 명 :

우편번호 :

보호관찰대상자 ○○○에 대한 경고장

1. 귀하는 현재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귀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3. 귀하가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구인·유치·처분취소·형사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경고이유서 1부

○○○○년 ○○월 ○○일

○○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관 : (인)

담 당 자 :

문 의 전 화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유치허가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유치하고자 하오니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거			
주민등록번호			
성 명		직 업	
구인일시	0000. 00. 00. 00:00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준수사항 위반사실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 검 찰 청

수신 ○○법원장

년 월 일

제목 유치허가 청구

위와 같은 유치허가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지방검찰청

검 사 (인)